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한일용 의원 외 5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한일용 의원 외 5명
- 제안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 - 155)

2. 제안이유

-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-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 삭제
(안 제8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
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·보관 의무 등을 삭제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와 그 연합회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 조직에 신고의무 및 기록·보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,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